

도로공사신고 교통 통제 · 제한 협의 결과서 (2018.08.01.부터 적용)

통행의 금지(제한) 협의자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담당자 : 손동영 
차단 또는 제한 기간	2025. 03. 27. ~ 2025. 05. 25.(60일간)	

공사명	2025년 부산울산선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도로 공사기간(최장2개월)	접수 실제	2025.. 03. 27. ~ 2025. 05. 25.(60일간)												
공사시간	주간	08:30	~	17:00	야간	- ~ -								
공사구간														
교통통제	☐ 1차로차단 ☒ 2차로차단 ☒ 3차로차단 ☐ 2개차로이상 동시차단 ☒ 갓길차단 ☐ 램프차단 ☐ 광장부차단 ☐ 노주브차단 ☐ 터널차단 ☒ 이동차단 ☒ 기타 차단방법 명시(갓길차단(약식))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	김선무		휴대전화	010-8325-713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 동아프라자 301												
발주자	회사명	한국도로공사울산지사		전화번호	052-701-6256									
	담당자	손동영		휴대전화	052-701-6256									
시공사	회사명	(주)명성엔지니어링		전화번호	031-886-7422									
	담당자	이상훈		휴대전화	010-7607-0624									
	현장책임자	장진원		휴대전화	010-3943-3525									
안전시설물 (2차로차단)	지시표시등	공사안내판	교통안내판	라바콘	싸인보드	드럼								
	12 (변화구간)	14	8	100 (필요수량만큼)	3	- (필요수량만큼)								
	경광등	신호수		에어간판	인지매트	지향성스피커								
	3	3 (그중에 로봇은 1개)		2	3 set	1								
	기타 안전시설물 -													
※ 차단방법이 2개 이상일 경우 “#별지” 활용 매 공사마다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안전시설은 규정된 수량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특별 조치 사항	1. 터널을 2개 이상 연속하여 차단하는 경우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물을 추가설치 - 싸인카 1대, 경광등 1대, 에어간판 1대 이상을 설치 ※ 그 외 추가 설치는 별도지시에 따른다 2. 본선 교통차단 작업시 싸인카 3대 이상 배치, 지향성 스피커 사용 3. 갓길차단 작업시 내리막 및 급커브 구간은 “공사중” 입간판 2개(ex.400m, 700m) 추가설치 4. 싸인카 또는 작업차량을 갓길에 배치할 경우에는 라바콘 최소 5개 이상 측면 및 후방에 설치 5. 본선 2차로, 3차로 차단작업시 신호수(로봇 1대)를 완충구간에 필히 설치 후 작업 6. 1차로, 2차로, 3차로 등 본선 차단작업의 경우 주의구간 900m지점에 “차로변경 공사안내판” 설치 7. 터널차단 작업시에는 주의구간 시작지점과 변화구간 시작지점을 명확히 하여 서류로 제출 8. 주말 등 공휴일 작업은 원칙적 금지, 기상악화(눈,비,강풍 등)시 작업금지, 공사시간 준수 9. 신고 되지 않은 차단방법 사용 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수량 부족 포함)경우에는 공사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조치 및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한 처벌됨을 고지함													
위 기재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03월 21일														
(신고인)대표자 김 선 무		(인)		현장책임자 이 상 훈		(인) 								

1) 말미에 도로공사와 관련된 「교통관리 예시도」를 모두 첨부한다.

※ 터널차단 등 주의구간, 변화구간 지점설정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는 별도의 예시도를 첨부

통행의 금지(제한)협약서

1. 공 사 명 : 2025년 부산울산선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터널,교량)
2. 차단 또는 제한구간 : , 부산울산선(부산울산고속도로) 전구간 양방향
3. 차단 또는 제한기간 : 2025. 03. 27. ~ 2025. 05. 25.(60일간)
(주간 08 : 30 ~ 17 : 00)
4. 사 유 : 부산울산선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5. 소통방법 : 도보점검, 갓길차단, 3차로 차단
2차로 차단시 1차로 소통, 3차로 차단시 1,2차로 소통
6. 시 공 사 : (주)명성엔지니어링
7. 감 독 관 : 도로안전팀 손동영 주임(010-3144-7119)
8. 기타/참고 : 우천 및 강풍으로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제70조의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도로관리청(공사시행청) :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장



고속도로 순찰대 제 8지구대장 귀 하

- 붙 임 : 1. 안전관리계획서 1부.
2. 작업장 안전관리도 1부.
3. 도로공사 신고서 1부. 끝,

준수사항 이행 확인서

☒ 준수사항

1. 공사 기간·시간을 준수하고 공사 중 교통처리 변경등을 할 경우
고속도로순찰대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2.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때는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한다.
3. 공사로 인한 차선 변경 시 안전시설물을 사전 설치하여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차량을 유도한다.
4. 공사현장에 자재, 잔토 등을 함부로 방치하여 도시(도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점용 면적을 극소화 한다.
5.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복구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지게하고 기타
고속도로 순찰차 교통관리 지시에 적극 협조한다.
6. 공사로 인한 교통안전시설물, 부속시설물, 기타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 회복하고 그 결과를
고속도로순찰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7. 위 준수 사항 위반시는(도로교통법 제6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7호)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5년 03월 21일

대표자

김 선 무



(인)

현장책임자

이 상 훈

(인)

도로공사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공사시행자)	성명 : 김 선 무	생년월일 : 1967. 08. 0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 (동아프라자 301호) (전화번호 : 031 - 886 - 7422)		
신고 구분	☒ [O] 사전 ☐ [] 사후		
공사 시행	일시 2025. 03. 27. ~ 2025. 05. 25.(60일간) (주간 08 : 30 ~ 17 : 00)		
	장소 부산울산선(부산울산고속도로) 전구간		
공사 기간	2025. 03. 27. ~ 2025. 05. 25.(60일간) (주간 08 : 30 ~ 17 : 00)		
공사시행 방법	부산울산고속도로내 점검 시 안전장구를 갖춘 작업인원이 1개조당 1인 이상 및 갓길 통제 및 갓길 도보로 이동하며 점검시행 부산울산고속도로내 점검 시 2차로 또는 3차로 통제하여 점검시행 야간은 교량 조명 휘도측정으로 갓길 이동작업 실시		
그 밖의 사항	기상악화, 사고발생, 교통량증가시 작업 중단		

「도로교통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5년 03월 21일

신고인 (주)명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김선무

고속도로순찰대 제 8 지구대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교통관리계획서 3. 각서	수수료 없음
------	--	-----------

교 통 관 리 계 획 서

2025. 03. 21

(주)명성엔지니어링

1.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2025년 부산울산선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 나. 기 간 : 2025. 03. 27. ~ 2025. 05. 25.(60일간)
- 다. 시 간 : (주간)08:30 - 17:00
- 라. 차단구간 : 고속국도 제65호선(부산울산고속도로) 전구간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유량

- 가. 안전시설물 설치 : 교통관리에시도 참조
- 나. 안전시설물 보유량 확보 계획(1개소 차단시)

품 명			단위	수 량	비 고
교 통 콘			EA	200 이상	높이 75cm 이상
안 내 입간판	공사안내 (12개)	2,000m 공사중	1	1	
		1,500m 공사중	1	1	
		1,000m 공사중	1	1	
		400m 공사중	2	2	
		200m 공사중	2	2	
		추월금지 100m	1	1	
		추월금지 300m	1	1	
		추월금지 600m	1	1	
		공사해제 입간판	2	2	
	교통안내 (12개)	차로규제 입간판	3	3	400m, 200m
		속도규제 입간판	9	9	60km, 80km용
싸인보드(카)			3	3	
(로봇)신호수			3	3	
인지메트			3	3	
에어간판			2	2	
경광등			3	3	

※ 작업차 및 싸인카 : 트럭 장착 완충시설(TMA) 장착 및 깃발 설치
(한국도로공사 교통관리기준 공사장 임시 교통통제시설 준용)

3. 교통통제 계획

가. 차단목적 : 부산울산고속도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나. 세부계획

노선명	공사구간	제한(작업)기간	공사내용	차단방법	비고
고속국도 제65호선	양방향 전구간	2025. 03. 27 ~ 2025. 05. 25	정밀안전점검	2~3차로 차단 갓길이동차단	

※ 점검시행 교통관리예시도 참조

다. 안전원 근무 및 안전장구 설치

1) 안전요원 근무요령(국토교통부 지침 : 5명)

▶ 교통감시원 : 교통콘의 전도상태, 각종표지를 수시점검하며 작업장 내의 작업원의 안전에 관하여 감시 또는 감독하여야 한다.

▶ 서행 신호수

교통제한구간에 진입하려는 차량에게 서행을 유도하며 운전자들에게 전방에 작업장이 있음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신호깃발(주간), 신호봉(야간)을 사용하여 상, 하로 수신호 하여야 한다. [첫 신호수는 로봇 신호기(수)를 통한 신호 권장]

▶ 수신호 방법

정 지	진 행	주의하면서 서행
		

▶ 작 업 원

작업장을 무단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 시에는 주행 차량의 주행방향을 바라보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항상 주행차량에 대한 자기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외 : 사고처리 및 잡물처리 시)

▶ 안전요원(작업원 포함)은 반드시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며, 교통감시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교통감시원과 서행신호수간 거리이격에 따른 연락과 전방교통흐름 및 위험성을 사전에 전달하기 위해 휴대용 무전기를 사용한다.

▶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은 정위치(현장)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안전장비 설치 및 요령

▶ 차로차단 시 공사차량을 제외한 본선-싸인카 3대, 갓길-싸인카 2대를 배치한다.

(필요시 공사예고차량 1대를 공사장 전 2~4km에 배치하여야 한다)

▶ 작업장 표시는 작업장 원거리부터 설치하며, 철거는 역순으로 한다.

▶ 작업장 예고표지는 갓길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 올수록 확실하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 표지판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갓길 차선에서 30cm이상의 간격을 두고 차량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 중앙분리대에 설치 시 폭이 협소할 경우 중앙분리대 구체위에 설치할 수 있다.

▶ 신호수 보호용 교통콘은 신호수 전방 10m ~ 30m 이상 거리에 2개 설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사전에 신호수(기)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곡선구간에는 서행신호수 전방 30m 부분에 경음기(경보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 싸인카는 작업장의 차로 통제가 시작되는 구간에 정차시켜 운전자들이 차로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화살표를 방향에 맞게 표출하여야 한다.

▶ 공사장과 주행도로와의 사이에는 최소 30cm 이상이 유지되도록 교통콘 등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별원칙

▶ 작업장의 안전관리자는 공사의 시작과 차단시점 및 해제 시 우리회사 교통정보센터로 통보하여 VMS 홍보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상 저속차선 보다는 고속차선을 우선으로 차단한다.

▶ 추월로, 주행로 차단 시 예고표지는 작업장 후방 1.5km 지점부터 설치, 갓길 차단 시 표지는 작업장 후방 0.4km 지점부터 설치한다.

▶ 작업장 예고표지의 위치 및 수량은 교통량 및 지형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태로 교통정체가 발생하여 1차 예고표지 위치 이상까지 차량대열이 지체될 경우에는 교통정보센터로 신속히 연락하여 교통 지체상황을 VMS 및 방송 매체를 통해 홍보해야 하며, 필요시 홍보내용에 우회도로 안내 등을 포함한다.

▶ 운전자는 비상시에 갓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속 주행하는 도로에서 갓길을 차단할 때에는 도로의 일부를 차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표지판 적정 설치위치가 교량, 터널, 곡선부, 수목성장 구간 등으로 식별이 곤란할 때는 교통정보센터와 협의 후 연장 및 단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안전요원은 식별이 용이한 복장으로 주간에는 황색 또는 형광색 조끼, 안전모를 착용하고 동색의 갓발, 호루라기를 휴대하며, 야간에는 반사 X밴드 착용과 안전 신호봉을 휴대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교통콘과 교통콘 사이의 설치거리는 교통관리예시도를 참고하여 설치하되, 교통정보센터 및 교통안전담당의 요청에 따라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종단구배 5%이상 구간 또는 시거 110m가 안 되는 구간에서는 가급적 신호 대기지점을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 경광등, 싸인보드 등은 자동 점멸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주간 및 야간에 상시 작동시키고, 단전되더라도 그 자체로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교통콘의 규격은 높이 75cm,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40cm인 정사각형을 표준으로 하며, 고속도로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교통콘의 색상은 주황색으로 상, 하단 2개소에 백색 초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한다.

▶ 공사시행 전 우리회사 교통안전 감독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이수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 전 공사에 사용되는 안전장구 및 표지판 등을 교통안전 감독관에게 검수 받는다. (교통안전교육 후 검수)

▶ 교통정보센터 및 안전순찰 근무자는 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시 현지시정 또는 공사를 통제, 제한할 수 있다.

4) 공사(작업장)의 통제 및 제한

- ▶ 공사 전일 교통차단계획서 미제출
- ▶ 사전 협의 없이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 현장 부재
- ▶ 안전조치 미흡 및 개인안전장구 미착용
- ▶ 강우 등 기상악화 및 공사로 인한 지·정체 발생
- ▶ 작업장 주변 교통사고 발생 및 미신고(미협의) 공사
- ▶ 교통정보센터 및 안전순찰 근무자의 시정, 개선요청 불응
- ▶ 차로차단 공사가 중복되어 민원예상 및 발생(5km 이내 작업)

5) 실제 배치인원 및 안전교육

- ▶ 로봇신호수 : 0대
- ▶ 유도 및 서행신호수 : 2명
- ▶ 작업자 : 4~10명
- ▶ 자체 안전교육(※우리회사 안전교육 1회/년 별도 시행)

구 분	교 육 자	교육대상	교 육 내 용	비 고
안전교육	이상훈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 ▪ 통제 신호수 ▪ 서행 신호수 ▪ 유도 신호수 ▪ 작업원 ▪ 운전원	▪ 기존 시설물확인 ▪ 신호수의 신호요령 ▪ 안전장구 착용 ▪ 사고 위험요소제거 ▪ 공사 후 정리정돈 철저 ▪ 차량안전 운행철저 ▪ 안전의식 고취	

- ▶ 교통차단 계획서

공사 전일 교통정보센터로 계획서 송부(전산입력 후 지구대 송부)

붙 임 : 교통관리예시도

교 통 차 단 계 획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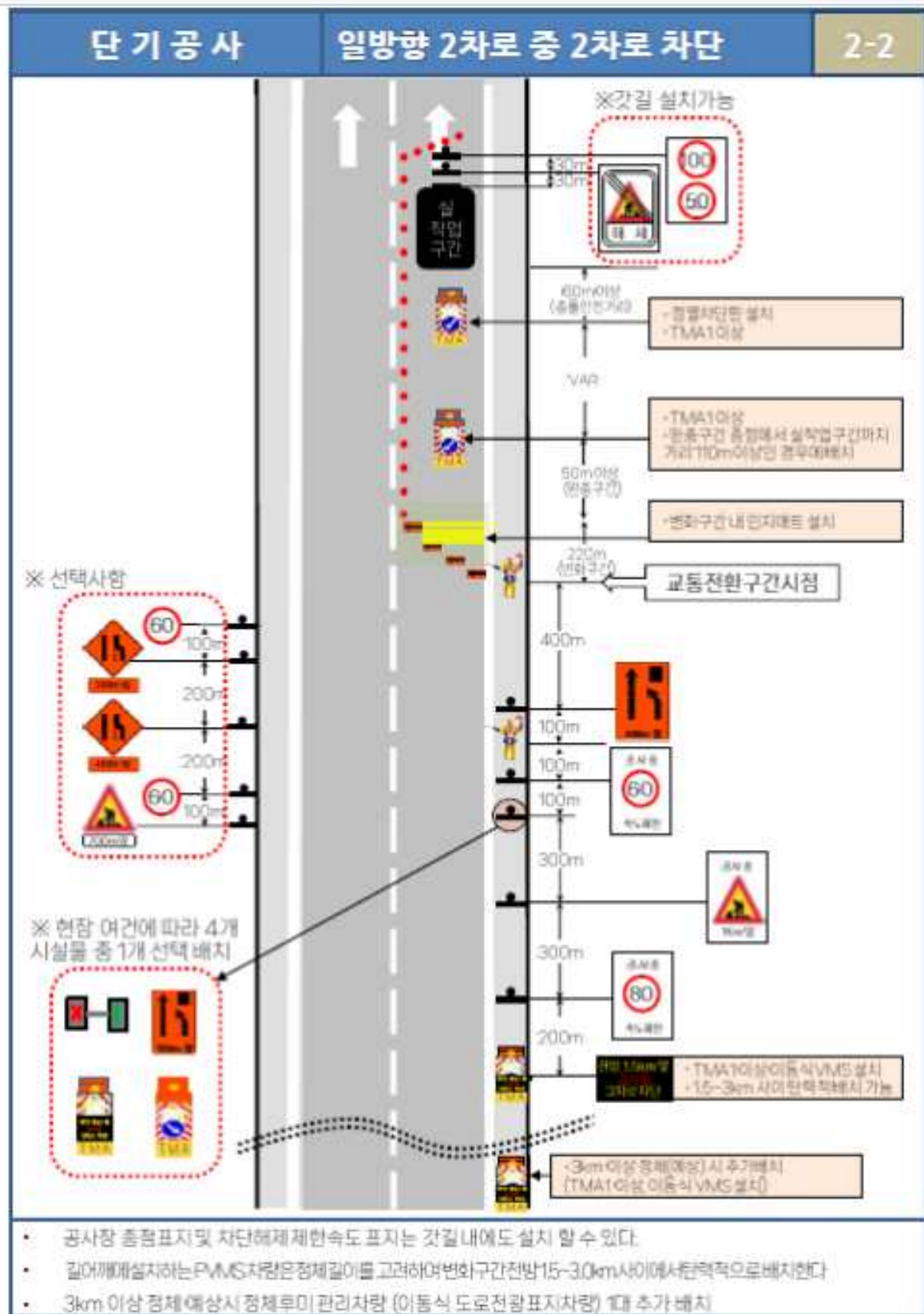
□ 발 신 : (주)명성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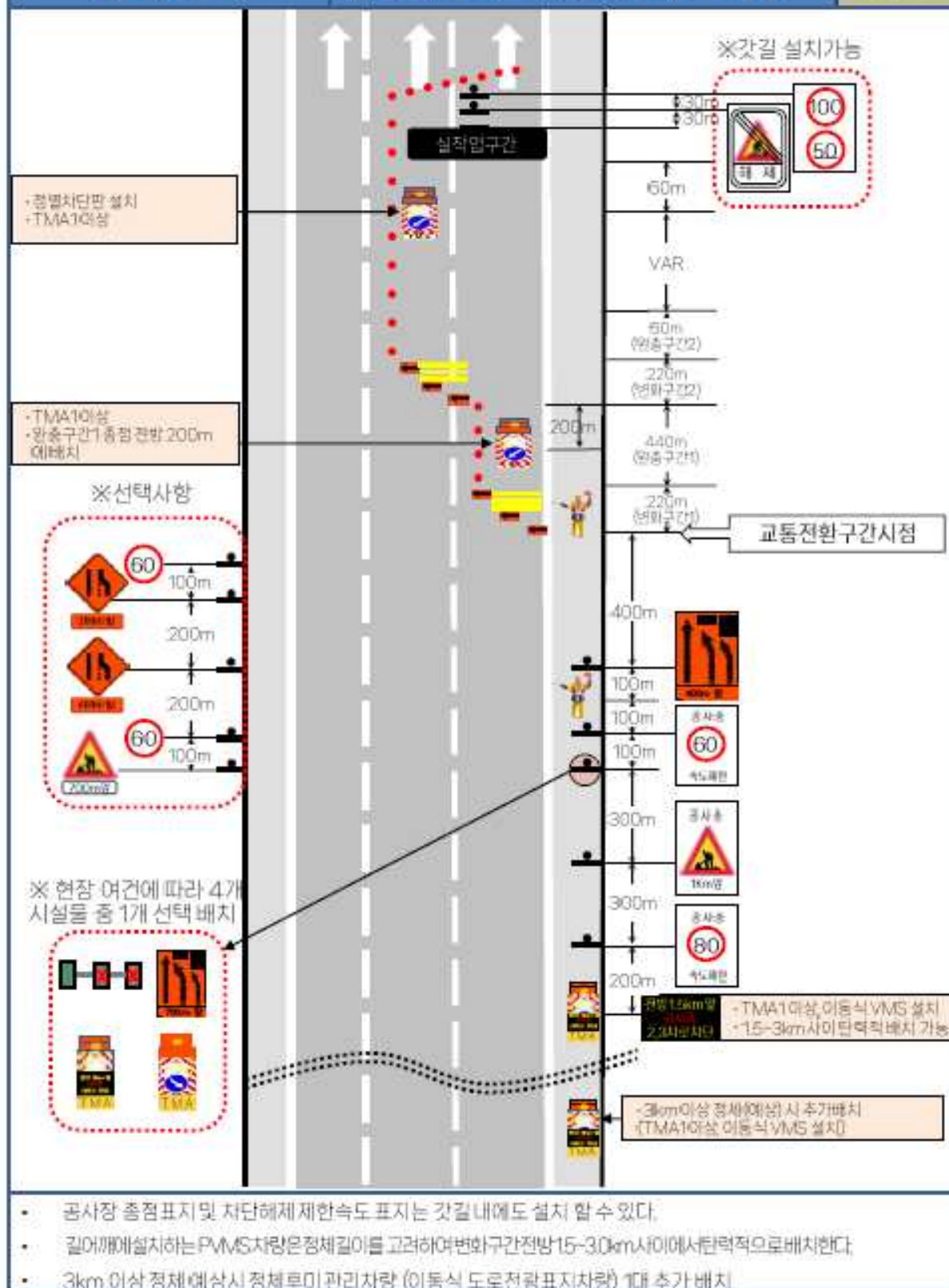
□ 수 신 : 교통정보센터(교통안전 감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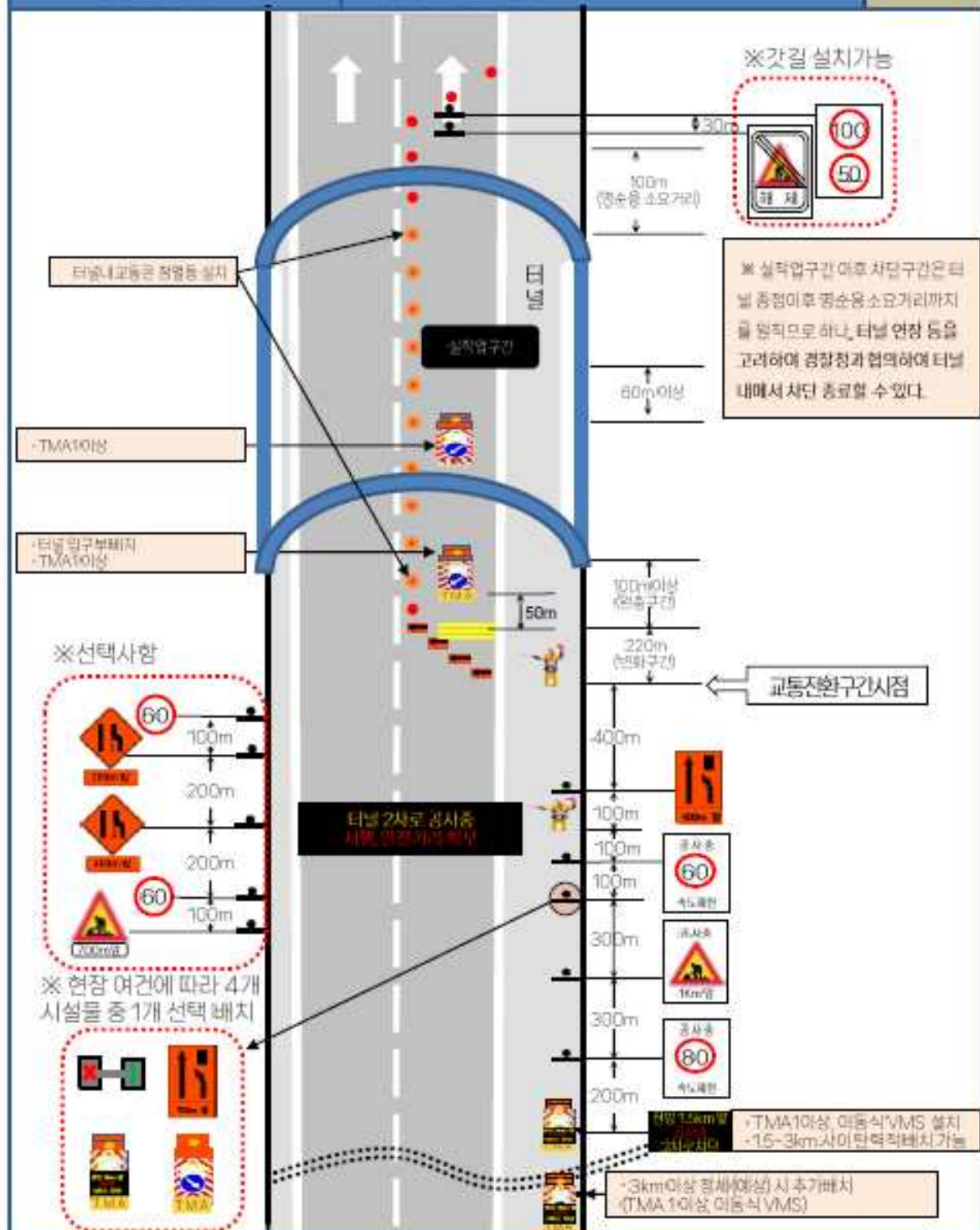
2025. 03. 26

공사업체	(주)명성엔지니어링		
공 사 명	2025년 부산울산선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터널,교량)		
공사일시	2025. 04. 15.(주간) 08:30 ~ 17:00		
공사구간	양방향 00.0~47.3km 지점		
교통제한방법 (차단방법)	갓길 차단 또는 갓길 이동, 3차로 차단		
교통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정	이름 : 이 상 훈	휴대전화 : 010-7670-0624
	부	이름 : 손 기 영	휴대전화 : 010-2446-1541
작업인원	4~10명		
작업장비	작업차 1~3대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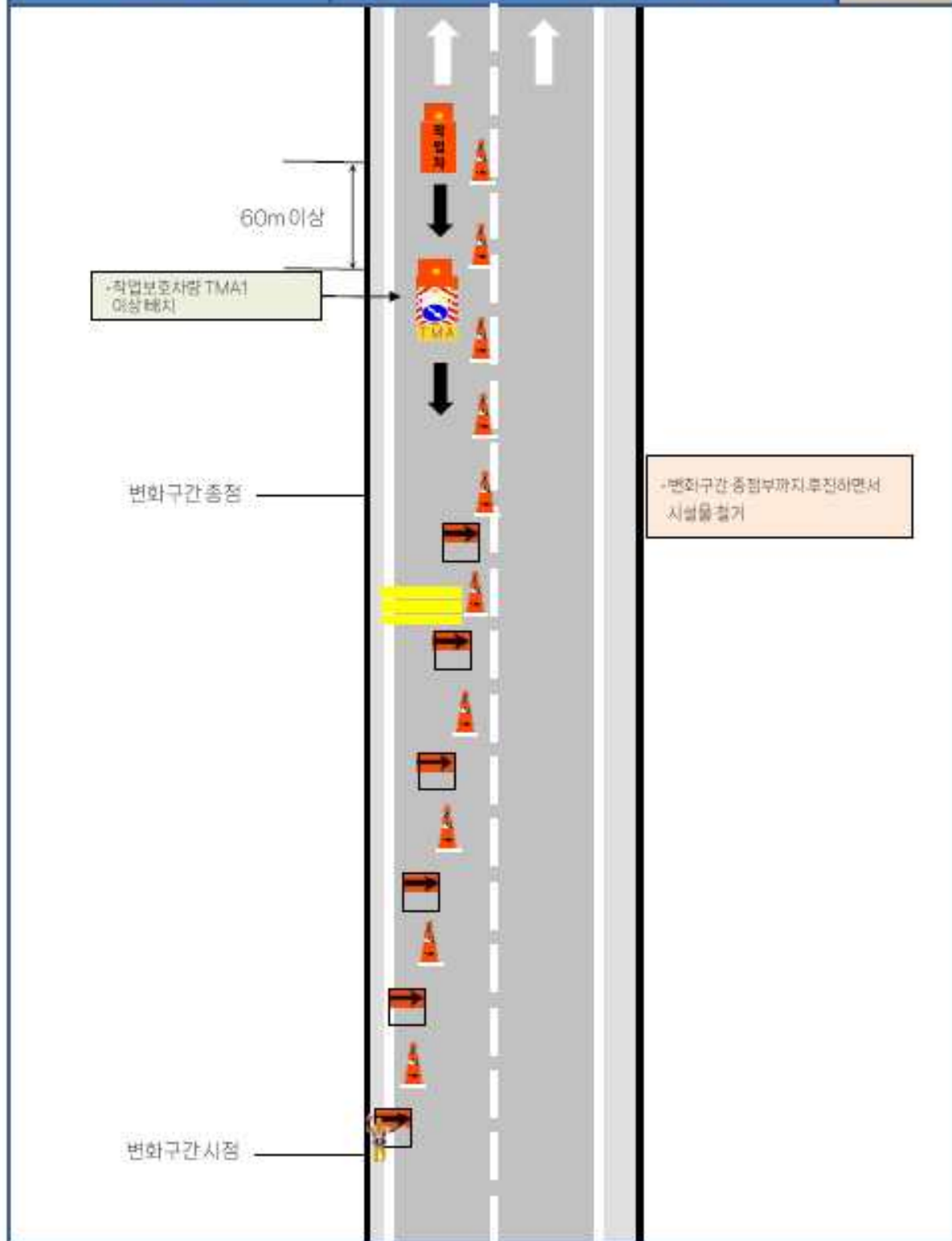
교통처리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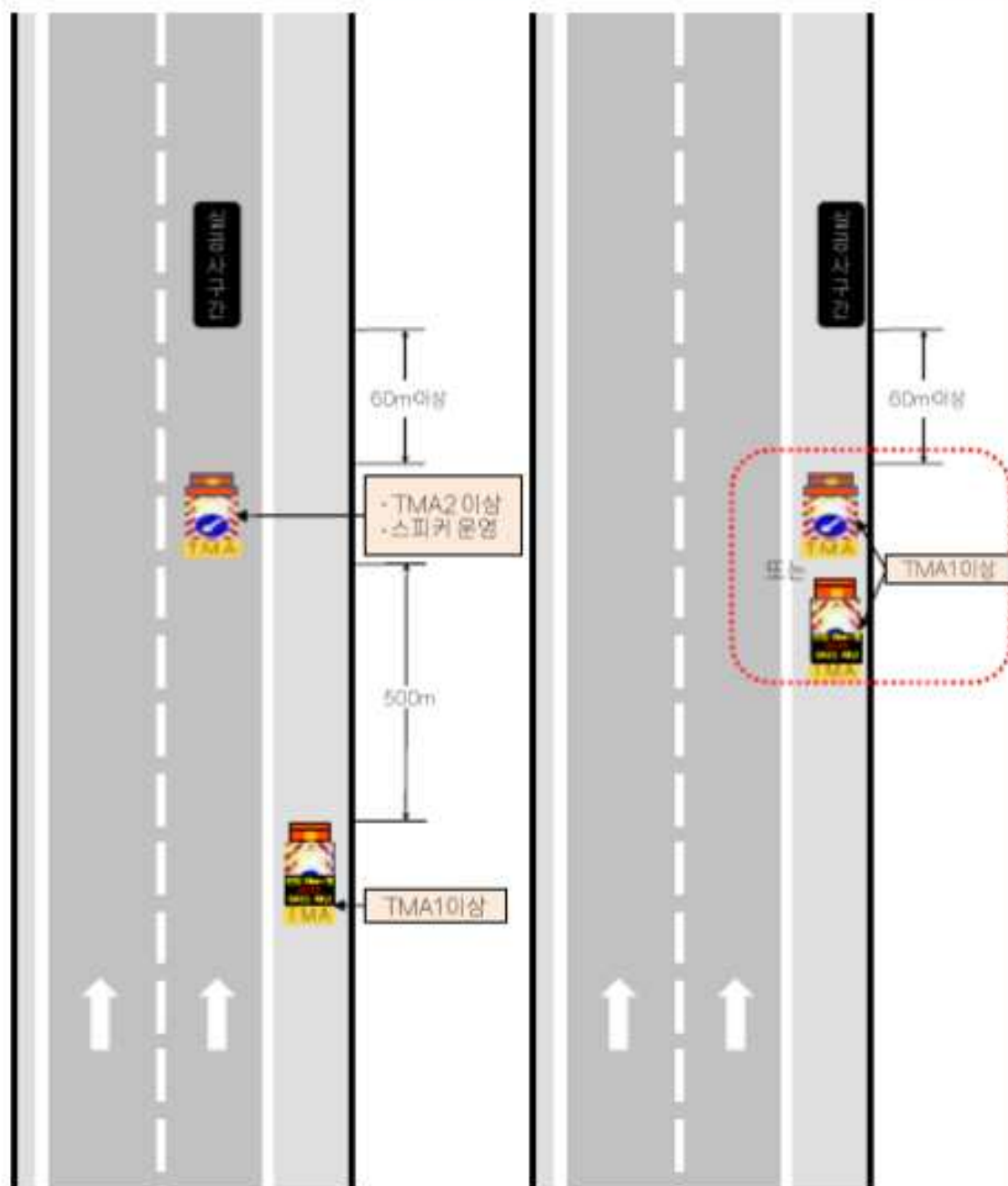






- 터널 내 차로변경이 가능할 경우 터널 진입 후 1km 이격하여 터널내에 변화구간을 설치 할 수 있다.
- 길어깨에 설치하는 P.V.M.S 차량은 정체 길이를 고려하여 변화구간 전방 15~30km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 3km 이상 정체 예상시 정체 무미관리 차량 (이동식 도로전광표지 차량) 1대 추가 배치





- 본선 구간 단시간 작업시 작업보호차량 TMA2 적용, 갓길 단시간 작업은 TMA10이상 적용

